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4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3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여 마포구민 등 마포아트센터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할인 제외 형태 중 일일이용료 삭제(제13조의3제3항)
- 나.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(별표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: 2024. 2. 29. ~ 3. 20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4) 가족행복지원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 - 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원안 의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3항 중 “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”을 “개인레슨”으로 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

(제12조제1항 관련)

별표 제1호. 대관료

나목. 개별기준의 표 7) 문화·체육 프로그램 차량, 그 밖의 차량의 주차요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주 차 요 금
문화·체육프로그램 차량	-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-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- 추가 10분당 500원
그 밖의 차량	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<삭제> - (현행과 같음)

별표 제2호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

나목. 개별기준의 표 2) 나)의 기타란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: 원/월)

구분	일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1일 입장
기타	· (현행과 같음) · (현행과 같음) · 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. 다만,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않음.				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13조의3(할인)
- 별표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제13조의3(할인) 및 별표 정비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정임영
연락처	02-3153-8352